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2027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정남

피고1.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일

변론 종결2024. 11. 19.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21. 12. 28. 접수 제11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D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7.경 체결된 매매계약, 같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21. 12.

29. 접수 제11708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12. 28. 접수 제1166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동업관계는 2020. 1.경 형성되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소외 E가 원고와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1735호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선행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 B이 '연대하여' E에게 1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1. 9. 14. 선고된 상황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동업관계에 있는 조합원 상호간 또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고도

개연성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위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21나68505호1))에 따라 2022. 9.부터 2023. 4.까지 판결금을 98,920,000원 및 그 부대비용 변제함으로써 피고 B의 내부적 분담비율 50%에 상응하는 49,460,000원(=98,920,000원 ÷ 2)을 넘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 B은, 원고와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선행 소송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지 3개월 이후이자 항소심 진행 중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들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에게 2021.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에게 2021.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역시 피고 D에게 2021.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사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6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 또는 2021. 12. 27.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D은 원고에게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B의 부 소외 F 또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6(녹취록)을 고려하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G)에 관하여 선행 소송의 원고인 E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으로 가압류 등기를 마쳐둔 사정(갑9-5)이 나타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지성

별지

1) 항소심에서는 피고 A의 일부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A이 B과 연대하여 E에게

98,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